1. 정보보보호 위탁 교육 상세 내용

*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 19조의2(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) 제 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임직원 정보교육 실시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.
  + 임원 : 3 시간 이상(단, 정보보호최고책임자 6시간 이상)
  + 일반직원 : 6시간 이상
  + 정보기술부문 업무 담당 직원 : 9시간 이상
  + 정보보호부문 업무 담당 직원 :12시간 이상
* 교육 컨텐츠와 관련 해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과정으로 진행 해야 하며, 교육과정 소개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.
* 임직원 전체 위탁 교육 수료가 완료(100%) 되어야 하며, 수료 완료를 위해 안내 메시지(이메일, 문자, 카카오 톡 等)을 통해 알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* 수료의 기준은 평가 제외하고 진도율 100%로 한다.
* 수료 완료시 금융감독원 제출을 위한 Report 가 제출 되어야 한다.
* 웹, 모바일등 지원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채널을 갖고 있어야 한다.
* 교육기간은 한달을 기준으로 진행 하나, 완료의 시점은 전체 인원이 수료 하는 시점으로 진행 한다.

1. 제안방법

* 시간/인원별 교육비 제안가로 제출 한다. (추가 인원 발생 할 수 있음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교육시간** | **인원** |
| 임원 | 3 | 12 |
| 정보기술 | 9 | 8 |
| 정보보호 | 12 | 2 |
| 일반 | 6 | 417 |
| **계** | | **439** |